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김종복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김종복 의원)

가. 제안사유

- 1) 여성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위원회 위원 자격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여성기업 임직원 비율 중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관내 여성기업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행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2)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노조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여성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위원회 위원 자격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여성기업 임직원 비율 중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여성기업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행 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 여성기업인 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배정수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배정수 의원)

가. 제안사유

- 1)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규정함(안 제2조)
- 2) 수상 분야 및 인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3) 공적 심사 및 수상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6조)
- 4) 시상 및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규정하고, 또한 수상 분야 및 인원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임.

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업의 사기를 증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공영애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공영애 의원)

가. 제안사유

1)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2)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4) 여성농어업인 경영 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9조)

5) 이주 여성 귀농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6) 여성농어업인의 단체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수립에 대한 근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임.

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청년농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공영애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공영애 의원)

가. 제안사유

- 1)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 열거함(안 제6조)
- 3) 청년농업인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근거, 지원사업의 범위, 청년농업인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임.

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여 농업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백진현 수질관리과장)

가. 제안사유

- 1)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 2)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대상시설 :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2) 시설위치 : 마도면 청원리 일원 (화성호 간척지 제4공구 내)
- 3) 시설용량 : 190m³/일 (정화처리 150m³/일 + 액비화 40m³/일)
- 4) 위탁기간 : 2023.10.01. ~ 2025.12.31. (2년3개월)
- 5) 사 업 비 : 금5,344,408,000원

※ 고정비 2,023백만원, 변동비 2,103백만원, 그 외 비용(일반관리비 등) 1,218백만원

6) 위탁사무

-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처리 업무(부대시설 포함)
-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설비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등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7) 자격요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 (SPC)에서 발주한 단위시설용량 50톤/일 이상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1년 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을 보유한 자
- 공동등급 가능 (5개사 이내)

8) 수탁자 선정

-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평가)를 통해 적격자 선정
 -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 가. 본 안건은 동탄2지구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나.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이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와 악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따른 재활용센터 설치 후 우리시 출연기관인 화성환경재단에 위탁운영 예정임.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0. 12. 1. 설립하여 운영중인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은 우리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화성시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환경재단의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용위치 : 화성시 봉담읍 상리27-1 전 농업기술센터동 1,2층 일부
- 2) 용 도 : 화성시 재활용센터
- 3) 전용면적 : 361.96㎡
- 4) 감면비율 : 100% 감면(무상 사용)
- 5) 감면기간 : 2023. 7. ~ 2028. 6.(5년)
- 6)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3. 3. : 2023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 3.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
 - 2023. 3. : 사무실 사용료 감면 통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설립예정인,

봉담에 위치한 前농업기술센터동 1,2층 일부 이용하는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용료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361㎡(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나. 본 동의를 통한 화성시 재활용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 1) 2013년 ~ 2014년도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RFID)의 경우 기기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 점진적 증가에 따라 향후 교체 필요성 있어 조례 정비 필요

나. 주요내용

-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호)
- 2) 공동주택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9호)
- 3) 상위법령 오타 수정(안 제12조제1항)
-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문구 추가(안 제12조제1항)
- 5) 감량기기 설치 관련 문구 추가(안 제12조제4항)
- 6) 감량기기 설치 방법 관련 문구 추가(안 제12조제5항)
- 7) 개별계량장비(RFID) 설치 및 기기교체 지원 조항 신설(안 제12조제9항)
- 8) 개별계량장비(RFID) 관리주체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 가. 본 안건은 2013년 ~ 2014년도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RFID)의 경우 기기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점진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교체 필요성 있어 개정된 사항으로,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공동주택의 정의,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기기교체 지원, 개별계량장비 관리 주체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임.

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계량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